

3.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

[양식 1]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(시·도 작성)

사업명 : **샬터·쉽터·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(서울특별시 성북구) - 신규사업**

< 회계-계정 > (백만원)

구 분	2014결산	2015예산 (A)	2016예산안 신청(B)	증(△)감	
				(B-A)	%
계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시생활환경개선(신규) - 샬터·쉽터·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(주거환경관리사업) 			150		증100%

※ 담당자 : 강현식 ☎ 2241-2774

1. 예산신청 개요

- 사업목적
 - 뉴타운구역 내 재개발해제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
- 사업내용

내역사업명 ¹⁾	사업기간	총사업비 ²⁾	사업규모 ³⁾	지원조건 ⁴⁾	시행주체 ⁵⁾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시생활환경개선(신규) - 샬터·쉽터·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(주거환경관리사업) 	'16 ~ '18	60억원	면적 : 48,514㎡ -주거환경개선 -기반시설정비 -범죄예방디자인적용 -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-주민역량강화사업 -계획수립	국고보조 (국고 50% 지방 50%)	서울시 성북구

- 2)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,
 괄호에는 '15년까지 기 투자액(예산)을 기재,
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'15년까지 기 투자액(예산)만 기재
- 3) 사업규모(연장 km, 개소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(없을 경우 생략 가능)
- 4) 지원형태(직접수행, 민간·지자체 보조, 출연(출자), 용자 등) 및 지원조건(보조율 등 재원분담, 용자조건, Matching 여부, 바우처,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)을 기재

□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

- 장위뉴타운 내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·사회·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이 가능
- 대상지와 인접하여 기 사업추진중인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며, 이미 운영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2. 2016년 예산신청 내용

□ 예산 신청 내역

(단위 : 개소, ha, 백만원)

내역사업명	'15예산		'16신청		산출근거
	물량	예산	물량	예산	
<합 계>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시생활환경 개선(신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샵터·쉽터·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(주거환경관리사업) 			3개년 중 1차년도 사업물량 계 획 수 립 용역 주 민 교 육 및 환경개선	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획수립용역 시행(200백만원) · 주민역량강화사업(90백만원) · 주거환경개선(10백만원)

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,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

5)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(연구소, 대학 등) 기재

□ 사업내역별 투자계획

(백만원)

내역사업명	재원 구분	총사업비	2014 까지	2015 예산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			2016	2017	2018	2019	2020 이후
< 합 계 >	계	6,000			300	3,614.2	2,085.8		
	국비	1,500			150	807.1	542.9		
	지방비	4,500			150	2,807.1	1,542.9		
	기타								
▪ 도시생활환경개선 (신규) - 삶터·쉼터·공 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(주거환 경관리사업)	소계	6,000			300	3,614.2	2,085.8		-
	국비	1,500			150	807.1	542.9		-
	지방비	4,500			150	2,807.1	1,542.9		-
	기타	-	-	-	-	-	-	-	-

□ '16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

내역사업명	2016년 예산(안)	부지확보	각종 영향평가	지방재정 투융자심사	비고
계					
▪ 도시생활환경개선 (신규) - 삶터·쉼터·공 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(주거환 경관리사업)	300백만원	해당없음	미이행	미이행	시기미도래

3. 고려사항

□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

- 2006. 10. 19 :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(서울시고시 제2006-357호)
- 2008. 05. 02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
- 2009. 11. 04 : 조합설립인가
- 2014. 01. 16 : 조합설립인가 취소
- 2014. 11. 06 : 구역해제 고시
- 2014. 12. 19 ~ 2015. 02. 16 : 장위12구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용역
- 2015. 03. 26 : 국민안전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

